

달라지는 축산정책



김영란
축산신문 취재국장,
본지 편집위원

새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어섰다. 지난 1년동안 새로운 제도와 정책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제도도 있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모토로 친환경육성 정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금까지 확정된 제도나 정책을 중심으로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본다.

■ 축산업 허가제 전업농가도 시행

새해 2월부터는 지난해 기업농에 이어 전업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허가제가 시행된다.

전업농가의 가축사육규모는 소 50두, 돼지 1천두, 닭 3만수, 오리 5천수이다. 대상면적은 소 350㎡, 젖소 540㎡, 돼지 800㎡, 닭 1천380㎡, 오리 1천230㎡이다.

■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편

원유의 성분위생수준 가격체계도 소비자 기호변화 충족을 위해 현재 유지방 함량 중심에서 1월부터 유단백질 기준을 새로이 신설하여 시행한다. 현행유지방, 체세포수, 세균수 기준에서 유단백질이 추가됐다.

■ 가축 출하 전 절식(絶食) 및 약물투여 금지

2월부터는 가축 출하 전 12시간 절식을 해야 하고 약물투여도 금지해야 한다(물은 제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 닭·오리 도축검사, 정부 검사관이 수행

금년 7월 1일부터 닭·오리 도축업체 가운데 평균 일일 8만 마리 이상 도축하는 작



업장에 대해서는 정부 검사관이 검사를 하게 된다. 그동안은 닭·오리 도축검사에 대해서는 생산업체 소속 책임 수의사가 수행토록 해왔다.

■ 안전관리 통합인증제도 도입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도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

현재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농장·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축산물판매업·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에 모두 도입되어 있으나, 유통단계별로 연계 없이 각각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에 따라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토종가축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인정기관의 심사 후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해야 한다.

토종가축 인정 대상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등 6개 축종이다.

토종가축이란,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여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이 가능한 가축을 말한다.

이처럼 토종가축 인정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은 토종가축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배합사료 가격 표시제 도입 및 제품별 성분·가격 비교표 공개

사료업체가 홈페이지 등에 공장고가격(kg 당 가격)을 표시토록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시 제정하게 된다. 이는 사료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함으로 풀이된다.

■ 돼지고기까지 이력제 시행 확대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축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 확대가 기대된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명칭 변경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 1월 31일 부터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 변경됐다.

그동안 사용해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을 그대로 번역한 용어로서,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

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게 된 것.

기준원 명칭변경과 함께 업무도 안전관리인증작업장 등의 인증,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평가 업무 외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인증기관 등으로 지정받아 수행하는 사업 등도 추가됐다.

■ 밭 직불금 지원 확대

동계 유희논에 사료작물 재배시 밭직불금을 ha당 40만원 지원한다.

이는 경지이용률 제고, 농가소득 향상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다.

■ 동물등록제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

그동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만 가능하던 것을 현금과 계좌이체도 추가됐다.

동물등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반려동물 관련 영업등록 시 편의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업종 신설

식육과 함께 수제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이 신설됐다.

식육가공품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건축비용, 가공·저장·판매시설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 동물복지 인증 확대

그동안은 동물복지 인증이 산란계와 돼지에서 육계가 추가됐다. ☞